

서울특별시 금천구 암환자 가발구입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

2024년 9월 4일
행정재경위원회

1. 심사경과

- 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24년 8월 22일, 고영찬 의원
- 나. 회부일자 : 2024년 8월 22일 회부
- 다. 상정일자 : 제251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회 중
제2차 행정재경위원회(2024년 9월 4일)
 - 상정, 제안설명, 검토보고, 질의·답변, 심사, 의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

가. 제안이유

- 항암치료 과정에서 신체적 고통과 함께 탈모 증세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는 암환자에게 가발구입비를 지원함으로써 암환자의 자존감 및 치료 의지를 북돋아 주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-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(안 제1조 및 제2조)
- 가발구입비 지원(안 제3조)
-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(안 제4조 및 제5조)
- 지원신청 및 지원제한(안 제6조 및 제7조)
- 환수조치 및 시행규칙(안 제8조 및 제9조)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가. 검토보고 : 전문위원 박병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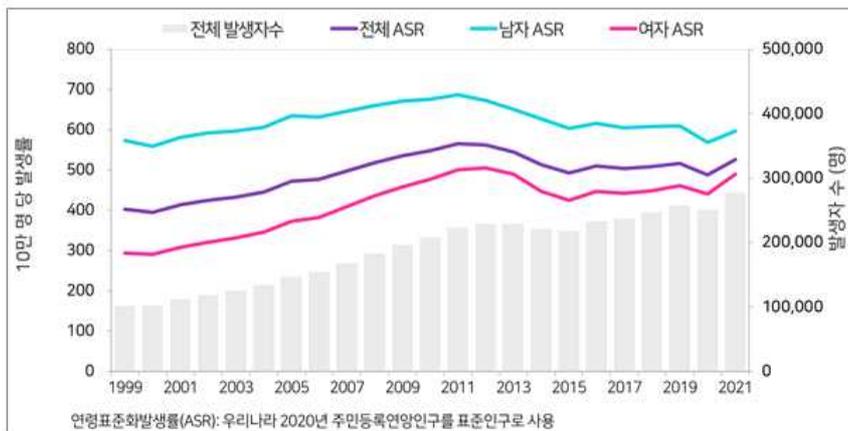
나. 검토의견

- 본 조례안은 항암치료로 인한 탈모증세로 인해 육체적 고통뿐만 아니라 정신적 고통까지 겪고 있는 암환자에게 자존감 향상과 치료의지를 강화할 것으로 판단되어 그 제정취지는 타당하다고 사료됨
- 현재 서울시 자치구 중 용산구에서 조례를 제정하여 지원하고 있으며, 전국적으로 20개 자치구에서 운영 중에 있음.
- 동 제정안은 총 9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
- 주요내용으로는
 - 안 제1조(목적)에서는 본 제정 조례의 목적에 대해서,
 - 안 제2조(정의)에서는 이 조례의 지원 대상이 암환자이므로 이를 정의하는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른 용어 정의를 규정하고 있음.
 - 안 제3조(가발구입비 지원)에서는 항암치료 부작용 중 탈모 증세가 발생한 암환자에게 가발구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는 근거 조항에 대하여,
 - 안 제4조(지원대상)에서는 가발구입비의 지원대상 요건에 대하여,
 - 안 제5조(지원내용)에서는 구청장이 지원할 수 있는 가발구입비의 지원 금액을 최대 70만원으로 규정하고 있으며,
 - ※ 인천시와 서울시 용산구는 70만원이나 대전 대덕구 및 부산 동래구는 50만원 등으로 자치단체마다 금액이 다소 다름.
 - 안 제6조(지원신청)에서는 가발구입비 지원을 받기 위해 제출하여야 할 신

청 서류와 절차를 규정하였고,

- 안 제7조(지원제한)에서는 지원수혜를 중복적으로 받지 못하도록 제한 문구를 명시하고 있음.
- 안 제8조(환수조치)에서는 잘못 지급된 경우 환수할 수 있는 규정을 두어 예산 집행의 명확성을 강조하였음.

- 국가암정보센터 자료에 의하면 전국 단위 암발생 통계를 산출하기 시작한 1999년 이후 2011년까지 남녀 전체에 대한 모든 암의 발생률은 연 평균 3.3%의 증가 추세이고, 2011년부터 2015년까지 평균 -3.1%의 감소 추세를 보였으나 2015년부터 최근까지는 뚜렷한 증감 추세는 보이지 않고 있음.



[모든 암 연도별 연령표준화발생률 추이]

- 참고로 2021년 암의 발생자 수는 총 277,523명이며, 남자는 143,723명, 여자는 133,800명으로 나타남.
- 우리나라 국민들이 기대수명(83.6세)까지 생존할 경우 암에 걸릴 확률은 38.1%였으며, 남자(80.6세)는 5명 중 2명(39.1%), 여자(86.6세)는 3명 중 1명(36.0%)에서 암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됨.
- 본 제정안은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 협의가 필요한 사항으로 소관부서에서는

조례가 제정되면 관련 절차 등을 이행함에 있어 소홀함이 없어야 할 것임.

- 본 제정안에 대하여 관련 규정과 자료를 검토한 결과 상위법령에 위배됨이 없고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5. 토론요지 : 생략

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7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